

창원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합531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4. 4 선고 2023나12299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합53108 판결

전문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에이치

담당변호사 이창만, 박찬우

변론 종결2023. 4. 20.

판결 선고2023. 7. 6.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7. 체결된 증여계약과 2018. 8.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3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거나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이하 '원고 공단'이라고도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민건강보험의 자격관리, 건강보험료 부과 및 징수, 부당이득금의 결정과 징수, 요양기관이 정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건강보험업무를 처리하는 특수 공법인이다.

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도 한다)을 D으로부터 임차하는 방식으로 개설·운영한 사람이고, 피고는 위 B의 배우자 즉 처이다.

나. 위 B의 처인 피고는 2016. 11. 21. 위 B에게서 창원시 성산구 E(도로명 주소: 창원시 성산구 F) 소재 G상가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도 한다) 지분 10의 9에 관하여 2016. 11.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갑 제9호증 참조).

위 B의 처인 피고는 2018. 8. 14. 위 B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지분 10분의 1에 관하여 2018. 8.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받았다(갑 제9호증 참조).

다. 한편 피고의 남편인 위 B은 아래와 같이 의료법 위반 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2019.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2018고합204호, 갑 제3호증 참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2020. 6. 24. 위 B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20노6호 참조), 위 형사판결은 2020. 7. 2. 확정되었다(갑 제5호증 참조).

1. 의료법 위반

피고인들(위 B 포함)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 I(이사장 D, 이하 '이 사건 장학재단'이라고도 한다)이 개설한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도 한다)을 위 D으로부터 임차하여 형식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의료사업으로 가장한 다음, 피고인들(위 B 포함)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J는 2011. 8. 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이 사건 병원에서 위 재단법인 이사장인 D과 임대차 보증금 500,000,000원, 월 차임 35,000,000원의 조건으로 위 병원의 물적·인적 시설 일체를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위 B은 2011. 10. 5.경 피고인 J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 병원을 임차하여 일명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J와 동업을 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들(위 B 포함)은 위 일시경부터 2018. 8. 6.까지 위 병원에서 의사 L 등을 채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들(위 B 포함)은 2011. 10. 7.경 이 사건 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을 통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마치 위 병원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위 B 포함)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위 B 포함)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건 원고)으로부터 2011. 10. 26.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2,158,5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5.경까지 총 675회에 걸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9,462,663,010원을, 2011. 11.

9.경부터 2017. 11. 24.경까지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845회에 걸쳐

9,174,811,69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위 B 포함)은 공모하여 피해자(원고 공단)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8,637,474,700원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위 B 포함)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을 기망하여 이 사건 병원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 등으로 요양급여비를 송금받았는바, 위 병원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허위 식자재 대금 및 공사대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위 B 포함)은 2011. 11. 2.경 위 병원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병원 임대인인 위 D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위 D의 사위인 M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병원 지출결의서에는 '공사대금'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29.경까지 사이에 총 36회에 걸쳐 허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775,000,000원을 송금하여 범죄 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들(위 B 포함)은 2012. 3. 31.경 위 병원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위 B 포함)이 관리하는 허위 직원인 N(피고인 J의 처), O(피고인 위 B의 처형) 명의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각 7,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24.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허위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290,875,654원을 송금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피고인들(위 B 포함)은 2013. 10. 16.경 위 병원에서, P을 운영하는 Q로부터 P에서 13,00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P 명의의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허위 식자재 대금 명목으로 합계 711,000,000원을 송금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원고 공단은 2019. 6. 10. 위 B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2)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36,905,263,340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후(갑 제6호증 참조), 2019. 7. 4. 위 B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위 요양급여비용 36,905,263,34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 통보를 하였다(갑 제7호증 참조).

마. 위 B의 처인 피고는 2020. 4. 29. 피고의 언니 O와 사이에, 피고가 위 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기간 2020. 4. 29.부터 2022.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1호증 참조).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의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5190 판결 등 참조).

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23718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277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위 B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2011. 10. 5.경부터 2018. 8. 6.까지 의사 L 등을 채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수령하였으므로, 원고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위 B에게서 그 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2016. 11. 17.자 증여 및 2018. 8. 13.자 증여 즉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위 2016. 11. 17.과 2018. 8. 14. 체결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위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환수결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채권이 성립할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해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그 후 원고 공단이 2019. 7. 4. 위 B에 대하여 36,905,263,340원에 대한 환수 결정을 통보하였으므로, 2019. 7. 4.자인 이 사건 환수결정이 비록 2016. 11. 17.자 및 2018. 8. 13.자인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원고 공단의 위 요양급여비용 환수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수 있다3).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2016. 11. 17.자 및 2018. 8. 13.자인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위 B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의 환수처분이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았고, 따라서 요양급여비용 환수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보건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이기는 하나(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등 참조), 2016. 11. 17.자 및 2018. 8. 13.자인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향후 위 B에 대하여 부당이득징수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전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위 징수가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원고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채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4) 제1항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보건대, 원고 공단의 청구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채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하고,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정하고 있는 사항 즉 보험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조 제4항은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민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공단의 위 B에 대한 요약급여비용 환수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해 '10년'이라고 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의 이 부분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는, 2016. 11. 17.자 증여계약과 2018. 8. 13.자 증여계약은 실제로는 2016. 11. 17.자에 발생한 하나의 계약에 해당하여 원고 공단의 피보전채권 성립 이전의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가사(假使) 하나의 계약이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B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그 이후인 2018. 8. 13.자 증여계약만이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보건대, 이 사건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각 증여계약 이전에 요약급여비용 환수채권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었음이 인정되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환수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환수채권이 성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B의 무자력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11. 17.자 증여 및 2018. 8. 13.자 증여 즉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위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시 위 B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G상가 H호(이 사건 부동산)	500,000,000		감정인의 시가 감정 결과5) 감정인은 2022. 8. 17.을 기준으로 시가를 감정하였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무렵에는 시가가 위 시가와 비슷하거나 낮았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피고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500,000,000원을 시가로 인정한다.
경남 함안군 R 전 1,296㎡	13,705,2006) 2018년 개별공시지가(㎡당) 21,600원 × 1,296㎡ × 1/2(위 B의 지분) = 13,705,200원, 2016년 11월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2018년		위 B의 지분 1/2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G상가 H호(이 사건 부동산)	500,000,000		감정인의 시가 감정 결과5) 감정인은 2022. 8. 17.을 기준으로 시가를 감정하였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무렵에는 시가가 위 시가와 비슷하거나 낮았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피고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500,000,000원을 시가로 인정한다.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으므로(갑 제14, 15, 16호증 참조), 피고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2018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이하 같다).		
경남 함안군 S 전 1,088㎡	14,252,8007) 2018년 개별공시지가(㎡당) 13,100원 × 1,088㎡ = 14,252,800원		
경남 함안군 T 전 241㎡	978,4608) 2018년 개별공시지가(㎡당) 4,060원 × 241㎡ = 978,460원		
원고의 요약급여비용 환수채무		-36,905,263,3409) 위 금액은 2011년 10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의 금액이나, 위 B의 적극재산의 가액을 고려하면 2016. 11. 17. 및 2018. 8. 13.에도 위 B의 적극재산을 훨씬 상회할 채무라고 보이므로, 갑 제6, 7호증의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소계	528,936,460	-36,905,263,340	-36,376,326,880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피고의 악의

1)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보건대, 2016. 11. 17.자 증여 및 2018. 8. 13.자 증여 즉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위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10를 함께 고려할 때 위 B은 이 사건 병원 운영을 위한 동업계약서 작성 무렵부터 '사무장병원'의 불법성과 이에 따라 부당이득의 징수 또는 추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B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통해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위 B의 배우자인 피고가 위 B과 함께 일을 하며 약 580,0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과 위와 같은 증여의 경위까지 감안할 때, 위 B과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단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여 선의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피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2018. 8. 14. 이후인 2020. 7. 17.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U조합,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비추어 피고의 원상회복의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2) 한편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범위 및 피고가 원고 공단에게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무렵의 시가라고 할 수 있는 위 500,000,000원 이하로 원고 공단이 구하고 있는 370,000,000원이라고 할 수 있다.

마. 중간 결론

사해행위인 위 B과 피고 간의 2016. 11. 17.자 및 2018. 8. 13.자 각 증여계약은 위 3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하여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취소채권자인 원고 공단에게 위 가액배상액인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공단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문식

판사정강은

판사김상욱

별지

1) 원고 즉 원고 공단은 원고 2022. 12.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3) 나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위와 같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대상을 법정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재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등 참조), 위 B은 원고 공단에 대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원고 공단의 위 B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이미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4)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5) 감정인은 2022. 8. 17.을 기준으로 시가를 감정하였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무렵에는

시가가 위 시가와 비슷하거나 낮았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피고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500,000,000원을 시가로 인정한다.

6) 2018년 개별공시지가(m^2 당) $21,600\text{원} \times 1,296\text{m}^2 \times 1/2$ (위 B의 지분) = 13,705,200원,
2016년 11월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2018년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으므로(갑 제14, 15,
16호증 참조), 피고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2018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이하 같다).

7) 2018년 개별공시지가(m^2 당) $13,100\text{원} \times 1,088\text{m}^2 = 14,252,800\text{원}$

8) 2018년 개별공시지가(m^2 당) $4,060\text{원} \times 241\text{m}^2 = 978,460\text{원}$

9) 위 금액은 2011년 10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의 금액이나, 위 B의 적극재산의 가액을
고려하면 2016. 11. 17. 및 2018. 8. 13.에도 위 B의 적극재산을 훨씬 상회할 채무라고 보이므로,
갑 제6, 7호증의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10) 2023. 3. 23.자 문서송부서에 첨부된 위 B에 대한 2018. 9. 17.자 피의자신문조서 및 2018. 9.
9.자 피의자신문조서 참고